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8조의2 별표 9)
- 담배꽂초나 휴지 등의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18조의2 별표 9)
-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를 경감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안 제18조의2 별표 10)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14. 12. 31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추어,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고,
- 2014. 10. 22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포장기준 위반 시 300만원으로 고정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